

제299회 임시회
환경수자원위원회

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
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제 안 설 명

(의안번호 제2101호)



2021. 3.

서울특별시의회
강대호 의원(더불어민주당, 중랑3)

□ 존경하는 김정환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 강 대 호 의원입니다.

□ 본 의원 외 11명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

□ 동 조례안은 수도시설 이설등에 있어 수요가(건축행위자)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했던 ‘급수관인입구경’ 산정방식을 ‘환산연면적’ 산정방식으로 변경하여 대규모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의 개발사업시 택지조성자가 납부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□ 동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,
조례 제4조제1항 및 별표의 원인자부담금 산정방식을 업종별 환산연면적 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.

□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으로,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